

‘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’ 규제특례 승인 공고

「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」 제11조의4 제2항 및 「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」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, 다음과 같이 규제특례를 부여한 내용을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11일
산업통상부장관

확인서-873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73호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2026년 7월 14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	엘지전자(주)
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107-86-14075
	주소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(여의도동)
대표자 류재철		
확인내용	명칭 인덕션 전기레인지의 원격 제어 실증 사업	
	주요내용	
	Wi-Fi 사용 환경에서 인덕션 전기레인지와 앱을 연동하여 인덕션 전기레인지의 내장(탑침형)센서 및 알고리즘을 통해 동작 변경·종료 등 제품 원격제어	
	유효기간	
	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	
	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	
	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	
	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,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, 별표3,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영요령 제3조, 별표1, 전기용품안전기준(KC60335-2-6) 2-6부 7.12, 22.40	
	구역 전국	
	기간 2년	
	규모 전기레인지 20만 대	
	조건	
	☐ 원격 제어와 관련된 사항을 국제표준(IEC 60335-2-6 Ed 7.0)에서 조건부로 허용하는 바 국제표준 동등 이상의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실증특례 부여	
	☒ 또한, 기 승인된 실증특례와 동일한 규모와 조건을 부여하고 실증결과를 모니터링하여 국표원에 제출할 것	
	① 실증 규모는 전기레인지 20만대로 한정	
	② 실증특례 제품 라벨 표시사항에 KC마크 사용불가 및 「산업융합촉진법」에 따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품임을 반드시 명시할 것	
	③ 실증특례 제품 모델 제한(모델명을 규제특례확인서에 기재)	
	- BEF3PMBLE, BEI3PMBLE, BEF3PSMLE, BEI3PSMLE, BEF3PBWLE, BEI3PBWLE	
	* 제품 모델명은 개발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하며, 변동 시 부처와 논의 진행 예정임	
	공통조건	
	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	
	공통사항	
	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	
	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	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

2026년 8월 11일

산업통상부장관

직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74호	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	2026년 7월 14일		
신청인	이름(회사명)	피네보 주식회사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852-81-01151		
	주소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7길 55, 에어프로스퀘어 6층 106호				
	대표자	심정석				
확인내용	영형	외국인 여권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확인 서비스				
	주요내용	여권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 정보를 등록 후 주류·담배 구매 및 청소년 유해업소·카지노 출입, 내국세 환급을 위한 신분·연령확인에 활용				
	유효기간	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				
	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	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8조 및 제29조 / 「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처치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」 제8조 / 「카지노업 영업준칙」 제15조				
	구역	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 등), 부산, 제주 지역의 H&B(Health & Beauty, 리테일, 편의점·마트 및 카지노 등 가맹점				
	기간	2년				
	규모	1차년도 플랫폼 가입자 수 1만명, 가맹점 300개 / 2차년도 플랫폼 가입자 수 5만명, 가맹점 300개				
	조건	1) 외국인 여권을 활용한 데이터 및 통계자료를 문체부에 정기보고(분기별) 2)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발생시 즉시 보고하고, 재경부는 미보고시 또는 피해정도에 따라 과제 중단 요청 가능 3) 각 사업별 CMS시스템에 등록된 여권 정보에 한해 특례를 인정(출입국 스탬프,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 서류확인은 현행 유지) 4)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5) 주요 편의점, 면세점,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무인매장을 상당 비율 포함시키고,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(성인용품점, 룸카페 등)의 출입 제한에 대한 충분한 검증 필요 6) 개인정보 유출,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, 성평등부는 미보고 또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과제 중단 요청 가능 7) 모바일 신분 확인·매출 내역 등 데이터 및 통계자료 분기별 제출및 책임보험 가입 및 손해배상 조건 협의 8) 여권과 동일한 수준의 공적증빙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증 가능				
	공통조건	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				
	공통사항	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				
		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				
	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					
2026년 8월 11일						

산업통상부장관

직인

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

제875호	규제특례 확인 연월일		2026년 7월 30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 주식회사 시스템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 865-81-03631	
	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내곡로 117, 4,5층		
	대표자 노태석		
확인내용	영형	공유 이용실 서비스	
	주요내용	각각의 사업자를 가진 다수의 이용사가 1개의 영업장 내에 입주하여 설비 및 시설을 공유하는 이용 서비스 제공	
	유효기간	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	
	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법령	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,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[별표 1] 제1호, 제2호 가목	
	구역	경기도 안산시	
	기간	2년	
	규모	공유이용실 1개소	
	조건	① (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) 신청기업이 보험계약자가 되고, 각 미용사업자는 피보험자 형태로 책임보험에 가입 ② (공동책임)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위반사항 발생 시 원인 제공자를 처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하며, 원인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유미용실 미용사업자의 공동책임으로 함 ③ (영업신고) 공유미용실의 입점 미용사는 모두 미용업 영업신고가 필수이며, 미이행 시 실증 특례 취소 ④ (가이드라인) 실증특례 기간 종료 후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·설비 가이드라인 작성 및 제출	
	공통조건	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	
	공통사항	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	
		특례 대상 규제법령의 정비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착수됨 (법 제10조의4 제5항, 법 제10조의5 제4항)	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3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10조의5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15항, 제16항 및 제11조의5 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.			
2026년 8월 11일			

산업통상부장관

직인

임시허가서

제61호	허가연월일		2026년 7월 14일
신청인	이름(회사명)	사업자(법인)등록번호	
	(주)바스맨테크놀로지	766-86-00782	
	주소		
	경기도 하남시 조정대로 150, 660호/661호(덕풍동, 아이데코)		
	대표자		
	김재영		
임시허가 내용	명칭		
	전기차 충전 인프라와 전기이륜차용 OBC기술이 융합된 Plug-in 충전시스템		
	유효기간		
	책임보험에 가입*하고 사업 개시 확인서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		
	* 책임보험 가입 불가시 사유서·손해배상 방안 마련 및 산업통상부 협의		
	주요내용		
	전기이륜차에 신청기업의 OBC를 내장하여 별도 장치 없이 공용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한 충전		
	조건		
	○ 임시허가 대상은 신청기업의 내장형 OBC가 탑재되고 안전성 및 전자파 적합성 등 관련 검증을 완료한 전기이륜차에 한정하며, 보급 대수는 연간 500대 이내로 제한함		
	○ 충전시설 이용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중 옥외에 3개소 이상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한정함(아파트 등 민간부문은 임시허가 대상에서 제외)		
○ 충전방식은 사업계획서상 검증된 교류 완속충전 방식에 한정하고, 충전시설 설치·관리 주체와 사전 협의된 구역 또는 전기이륜차 공동 활용 가능 구역으로 지정·표시된 구역에서만 이용하도록 함			
○ 기존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충전기 이용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1회 충전시설 이용시간은 원칙적으로 2시간 이내로 운영하고, 사업자는 충전 이용현황, 안전사고 발생 여부, 민원 및 이용자 간 분쟁 발생 현황 등을 관리하여 관계기관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			
공통조건			
사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			
공통사항			
사업자가 실증특례·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			

「산업융합 촉진법」 제10조의6 제6항부터 제9항까지,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8항,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라 임시허가서를 발급합니다.

2026년 8월 11일

산업통상부장관

직인